|  |  |  |
| --- | --- | --- |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2]19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 위생청 :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검사업무 절차를 규범화하며, 요식서비스단위가 식품안전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실시조례>,<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 국가식품약품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을 제정한바 이를 인쇄 배포하며, 이와 같이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2년 7월 26일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  **제1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요식서비스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실시조례>,<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특수한 상황에서 요식서비스단위가 법에 의거한 요식업 서비스활동 종사여부에 대하여 불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 모두 행정관할 구역내의 요식서비스단위에 대하여 저촉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아래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요식서비스단위가 식품안전 법률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심각한 위해를 조성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요식서비스단위에 식품안전의 잠복 문제가 존재하여 심각한 위해를 조성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요식서비스단위에 식품안전 잠복문제가 존재하여 지역성, 통계성의 식품안전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는 법에 의거하여 면밀하고 신중해야 하며,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실시는 조사를 조직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저촉행위를 조사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유관 인원,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인권 및 피조사단위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인원이 조직한다. 필요 시, 유관 전문가와 언론기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단장책임제를 시행한다.  **제7조**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피조사단위인 요식서비스단위는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협조 및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를 조사하는 일자, 장소에 대한 사항은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확정한다.  조사단 단장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조사 안배사항을 유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우선 고지할 수 없다.  **제9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 구성원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조사 받은 요식서비스단위를 통일한다.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현장 조사절차와 요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조사 시, 조사시간, 장소, 현장상황, 존재하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기록 또는 촬영을 해야 한다. 관련 문서자료는 복사를 하고, 유관 인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받는 요식서비스단위의 법정대표인(또는 책임인 또는 기업주)은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기록에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거절 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기록상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요식서비스단위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진술 및 해명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완료 후,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적시에 저촉행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건의를 제기하고,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1)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법률책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 절차에 따라 입안 처리해야 한다.  (2) 기타 부문이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경우, 적시에 인계해야 한다.  (3)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3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저촉행위 조사현황을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처리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적시에 조사처리결과를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정보가 공포한 유관 요구에 따라 적시에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유관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제16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에 참여한 유관부문과 인원은 검사업무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유관 상황과 신고인 등 관련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유관 업무기율을 위반한 인원은 법에 의거, 기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각 성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현지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발포일부터 시행된다.  첨부문건 :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검사기록(생략) |  |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关于印发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暂行办法的通知**  国食药监食[2012]19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食品药品监督管理局，北京市卫生局、福建省卫生厅：  　　为进一步加强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规范监督检查工作程序，推动餐饮服务单位落实食品安全主体责任，根据《食品安全法》、《食品安全法实施条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等法律、法规、规章的规定，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制定了《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暂行办法》。现予印发，请遵照执行。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2012年7月26日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  **暂行办法**    **第一条**　为加强和规范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促进餐饮服务食品安全责任落实，根据《食品安全法》、《食品安全法实施条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等法律、法规、规章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是指食品药品监管部门针对特定情形对餐饮服务单位是否依法从事餐饮服务活动实施的突击现场检查。  各级食品药品监管部门均可对行政辖区内餐饮服务单位实施飞行检查。  **第三条**　有以下情形之一的，可组织开展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  　 （一）餐饮服务单位涉嫌严重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可能造成严重危害或重大社会影响的；  　 （二）餐饮服务单位存在严重食品安全隐患，可能造成严重危害或重大社会影响的；  　 （三）餐饮服务单位存在食品安全隐患，可能引发区域性、系统性食品安全风险的；  　 （四）其他有必要组织开展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的。  **第四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应遵循依法、审慎、及时、客观、公正的原则。  **第五条**　开展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应经组织检查的食品药品监管部门有关负责人批准。  **第六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由组织飞行检查的食品药品监管部门相关人员、下级食品药品监管部门相关人员以及对被检查单位具有管辖权的食品药品监管部门相关人员组成。必要时，可请有关专家、媒体记者参加。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成员不少于3人，实行组长负责制。  **第七条**　下级食品药品监管部门、被检查的餐饮服务单位应当协助、配合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进行检查。  **第八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的时间、地点、事项由组织开展飞行检查的食品药品监管部门确定。  　 未经检查组组长同意，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检查安排事项事先告知有关单位或个人。  **第九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成员应到指定地点集中，统一前往被检查的餐饮服务单位。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应按现场监督检查程序和要求开展检查。  **第十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在检查时应详细记录检查时间、地点、现场状况、存在问题等，对发现的问题进行记录或拍摄，对相关文件资料进行复印，对有关人员进行调查询问。必要时，可由具有管辖权的食品药品监管部门依法采取相应行政措施。  **第十一条**　被检查的餐饮服务单位的法定代表人（负责人或业主）应在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记录上签字；拒绝签字的，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应在检查记录中注明。  　 餐饮服务单位对检查结果有异议的，可依法陈述、申辩。  **第十二条**　检查结束后，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应及时撰写飞行检查报告，提出处理建议，责令由具有管辖权的食品药品监管部门依法处理。  　（一）存在违法违规行为，需要追究法律责任的，应按有关程序立案处理。  　 （二）涉及其他部门监管职责的，应及时移交。  　 （三）涉嫌犯罪的，应及时移送司法机关。  **第十三条**　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组可将飞行检查情况通报地方政府，并提出处理建议。  **第十四条**　具有管辖权的食品药品监管部门应及时将检查处理结果上报组织开展飞行检查的食品药品监管部门。  **第十五条**　食品药品监管部门应按食品安全信息公布有关要求，及时向社会公布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有关情况。  **第十六条**　参与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的有关部门和人员应严格遵守检查工作纪律，不得泄露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有关情况和举报人等相关信息。对违反有关工作纪律的人员，依法依纪进行处理。  **第十七条**　各省食品药品监管部门可结合本地实际制定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实施细则。  **第十八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附件：餐饮服务食品安全飞行检查记录（略） |